

○ 개별 기준(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직종별	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상담소 등의 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국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담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
직업 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무지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개별 기준상의 경력인정 범위(상근경력 인정 원칙)

- 비상근 근무자 및 자원활동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월 예) A라는 자원봉사자가 2014년 1월에 1~3째 주까지 매주 15시간을, 4째 주에는 12시간을 근무하고, 2월에는 총 65시간을 근무한 경우. A의 근무 경력은 1개월 3주로 산정
- 경력산정 시 유의사항 : 급여 지급과 관련된 경력 산정과는 무관, 4주를 1개월로 계산